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8가합53256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B 주식회사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이학민

변론 종결2020. 6. 9.

판결 선고2020. 7. 2.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9,829,024원 및 그 중 1,151,758,210원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7. 10.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7. 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1,226,694,946원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7.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2. 15.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7. 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713,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9,829,024원 및 그 중 1,151,758,210원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7. 10.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1,266,694,946원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7.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2. 15.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1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510,860,7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510,860,7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은 그 순번에 따라 '제1, 2, 3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다.

1	2016.5.26.경	1,309,600,000원	2016.5.17.~2017.12.31.	주식회사 E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F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2공구)
2	2016.5.26.경	1,441,000,000원	2016.5.31.~2018.5.31.	주식회사 G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H 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3	2016.10.31.경	713,000,000원	2016.9.28.~2017.12.31.	I 주식회사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천안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피고 C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보험사고 및 주계약의 해지) 본인(피고 회사)과 보증인(피고 C)은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시기 및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보통약관의 내용이 아래 각 호와 같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본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보증하는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주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③ 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회사가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1. 본인·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구상채권·대위채권 등의 보전(해지포함)·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소요된 비용
3. 소송비용,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실행 등에 소요된 법적 제비용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조회 비용 등
4. 기타 법률상 또는 약정상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제5조(사전구상)

① 본인과 보증인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회사에 해당 채무액을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또는 최고없이 본인과 보증인에게 사전상환을 위한 채권행사(이하 "사전구상권"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행사 전에 미리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2. K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된 때
3. 파산·회생(개인회생포함)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 본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 또는 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압류통지(납기전 납부고지 포함)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때
5. 영업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한 때
6. 회사와 본인 사이에 체결된 다른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7. 제4호 이외의 본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압류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납기전 납부고지 포함)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본인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회사의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8. 허위자료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 된 때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본인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4)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제4조 제2항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2016. 1. 1.부터 시행된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익일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회사는 2017. 7. 18.경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주계약으로 정한 위 각 하도급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의 이행을 포기하였다. 이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제1, 2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금액, 그 중 피고 회사로부터 회수한 회수금,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원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제1 보증 보험 계약	주식회사 E	17.9.28.	1,309,600,000	1,280,813,544	129,055,334	8,230,140	1,151,758,210
제2 보증 보험 계약	주식회사 G	17.11.17.	1,441,000,000	1,441,000,000	214,305,054	10,145,728	1,226,694,946

다. 피고 C과 피고 D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C은 2017. 5. 2.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L에게 2017. 5. 2.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피고 C)"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L)"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 ① 신탁기간은 별첨 2의 1과 같다.
- ② 제1항의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자)

-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첨 2의 2와 같다.
- ②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을"이 발행한 수익권 증서를 근거로 한 우선수익자의 채무자(별첨2의 3)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에 한한다.
- ② 우선수익자는 "을"이 발행하는 수익권 증서에 기재된 별첨 2의 4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제21조(처분대금 등 정산)

- ① "을"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가. 비용 :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광고료 등(처분잔대금 수납약정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

나. 보수 :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 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 수수료

2. 신탁등기전 소액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4조)

3. 신탁등기전 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근저당권(채권최고액범위 내),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단, 이들간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수탁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임대차보증금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갑")에게 지급

〈별첨2〉 계약의 내용

1. 신탁기간 : 2017년 5월 2.일로부터 신탁계약해지일까지

2. 수익자

가. 우선수익자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 : (주)M

나. 수익자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 피고 C

3. 채무자 : 피고 C

4. 수익권증서 금액

금이십이억팔천만원정(₩2,280,000,000원)

2) 피고 C은 2017. 5. 30. L과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와 수익권증서 금액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첨2〉

2. 수익자

가. 우선수익자

1순위 : (주)M

2순위 : N

4. 수익권 증서 금액

1순위 : 2,280,000,000원

2순위 : 100,000,000원

3) 피고 C은 2017. 7. 11. L과 위 변경계약의 우선수익자와 수익권증서금액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2017. 5. 30. 및 2017. 7. 11. 체결한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별첨2〉

2. 수익자

가. 우선수익자

1순위 : (주)M

2순위 : N

3순위 : O

4. 수익권 증서 금액

1순위 : 2,280,000,000원

2순위 : 100,000,000원

3순위 : 1,000,000,000원

4) 피고 C은 2017. 7. 19.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D에게 2017. 7. 1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에게 제1, 2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3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구상금 채무와 사전구상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각 구상금 채무와 사전구상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9,829,024원[=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원금 잔액 1,151,758,210원(= 지급금액 1,280,813,544 - 회수금 129,055,334원) + 제2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원금 잔액 1,226,694,946원(= 지급금액 1,441,000,000원 - 회수금 214,305,054원) + 제3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사전구상금 713,000,000원 + 제1보증보험계약의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8,230,140원 + 제2보증보험계약의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10,145,728원] 및 그 중 1,151,758,210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9. 29.부터 위 지급일 기준 30일째가 되는 날인 2017. 10.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위 지급일 기준 90일째가 되는 날인 2017. 12.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8. 7.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1,226,694,946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위 지급일 기준 30일째가 되는 날인 2017. 12.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위 지급일 기준 90일째가 되는 날인 2018. 2. 15.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8. 7.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71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은 약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인 피고 C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평가금액인 510,860,712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일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그 부동산을

환수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도 이는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 C은 2017. 5. 2. L과 금전채권자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우선수익자로 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를 피고 C으로 하여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L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시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정산하여 M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피고 C이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한 사실, 그 후 2017. 5. 30. 및 2017. 7. 11. 두 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가 M(1순위), N(2순위), O(3순위)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 C은 2017. 7. 19.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D에게 2017. 7. 1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나 제8,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P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는 수익권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2) 감정인 P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자 M, 2순위 우선수익자 N, 3순위 우선수익자 O의 우선수익권을 고려한 피고 C의 수익권 가치에 관하여 감정평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였다. 감정인 P은 감정평가 방식에 관하여 위 대법원 2012다111401 판결 등을 고려하여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의 가치에서 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달리 위 감정결과에 오류나 특이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신탁종료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400,000,000원인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과 보수를 제외한 우선수익자들의 우선수익금액 합계만 하더라도 2,939,139,288원(= M 1,889,139,288원 + N 50,000,000원 + O 1,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 시가를 상회하므로 수익권의 잔존가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2순위 우선수익자 N의 우선수익권은 N이 피고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채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그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어렵다는 점을 들어, ② 3순위 우선수익자 O의 우선수익권은 O이 피고 C에게 1,000,000,000원을 빌려줄 자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O은 피고 회사 소재지인 Q빌딩의 관리 업무를 맡은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피고 C이 그 Q빌딩 S호의 소유자로서 T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한 점, O이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는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지급된 점, O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후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까지 채 20일도 걸리지 않았고, O이 피고 C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한 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거나 수익권을 포기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채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위 각 우선수익권은 피고 C의 수익권 가액 산정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는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L이 발행한 수익권 증서를 근거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N, O의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 자체가 무효이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우선수익권은 피고 C의 수익권의 가액 산정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N, O의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이 무효이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 해지 후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해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 회사, C 사이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형표

판사박수진

판사배인영

별지